

#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 주 의 요 구

제 목 농지전용 사전협의 절차 미준수

기 관 명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당진시, 부여군, 청양군, 태안군

내 용

충청남도에서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발전 및 국토환경보전을 위하여 농지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농지법」 제34조 및 「농지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르면 농지의 전용에 관하여 협의(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협의요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도로법」 제25조제2항, 「하천법」 제32조제3항,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2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3항과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소하천의 정비를 시행하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및 실시계획을 작성 하거나 인가하기 위하여 농지전용허가를 의제하기 위해서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로개설, 하천공사, 개발행위 등 대규모 공공

사업 수행을 위해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농지전용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청양군 등 7개 시·군에서는 2017년 6월말 까지 농지전용 사전협의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총 13개사업 456,881㎡의 전용 면적에 대해 농지전용 협의요청 또는 농지전용에 대한 협의기관의 동의를 선행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추진부서에서는 실시계획을 승인(사업계획 고시) 하거나 착공계를 접수하는 등 농지전용 사전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 하였다.

**조치할 사항**        **충청남도 천안시장, 공주시장, 보령시장, 당진시장, 부여군수, 청양군수, 태안군수는**

**[주의]**    앞으로 사업추진 부서에서 도로개설, 하천공사 등 대규모 공공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지담당 부서에 농지전용 협의를 반드시 거친 후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